

의정부지방법원 2021. 10. 5 선고 2021가단11307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1. 8. 31.

판 결 선 고 2021. 10. 5.

주 문

1.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5. 18. 체결된 상속재산
협의분할 계약을 20,4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20,400,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
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소외 D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차전148896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(2020. 9. 24. 확정)에 기하여 '29,461,055원 및 그 중 20,000,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'(이하 '이 사건 원고 채권'이라 한다)을 가지고 있다.

나. 의정부시 E 외 3필지 지상 F아파트 G호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는 피고와 D의 모친인 망 H의 소유였다가 피고와 D 사이 2018. 5. 18.자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(이하 '이 사건 계약'이라 한다)에 따라 2018. 7. 3. 피고의 단독소유로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다. 이 사건 계약 당시 D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 대하여 위 가항 기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.

라.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9. 6. 17. 피고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4,000,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하였으므로,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채무자인 D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.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.

다음으로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에 관하여 보건대,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된 이후 추가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, 원상회복은 원고의 청구에 따라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원고 채권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20,400,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강진우

별 지 목 록

1. 1동의 건물의 표시

경기도 의정부시 외 3필지 아파트
 동 제3층 호
 [도로명주소] 경기도 의정부시

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지붕 10층 아파트

1층 611.94㎡

2층 611.94㎡

3층 611.94㎡

4층 611.94㎡

5층 600.18㎡

6층 600.18㎡

7층 600.18㎡

8층 600.18㎡

9층 600.18㎡

10층 600.18㎡

지하 1층 605.94㎡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제3층 호

철근콘크리트구조 84.91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대지권의 비율 : 8469분의 34.45

